

영국의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부

(인용 및 개시)

제1조 본 규정은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1998”이라 칭하며, 1998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제2부 일반사항

(장비의 적합성)

제4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가 사용이나 제공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되고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작업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주는 그 장비가 사용될 사업장이나 업무내에 존재하는 작업조건과 인원에 대한 보건 및 안전의 위험성과 그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를 그 장비에 적합한 작업 및 적합한 작업 조건하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규정에서 “적합성”이라 함은 어떤 사람의 보건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해석에 관한 제2조 및 본 규정의 적용 및 타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제3조는 그 수록을 생략함.

(보수·정비)

제5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를 효과적인 상태에서 효과적인 작업순서로, 그리고 잘 수리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주는 어떤 기계에 대해 정비관리 기록지가 있을 경우에 최신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검사)

제6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의 안전이 설치조건 여하에 달려 있는 경우 그 것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고 작업하기에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설치 이후 및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② 또는 신규 장소나 위치에 조립된 이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조건하에 있으며, 그러한 손상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여지가 있을 때는 보건 및 안전 조건이 유지되고 어떠한 손상도 적기에 발견되어 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

① 적절한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하고

②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업주는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본 규정에 의한 다음 검사의 기록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모든 사업주는 어떤 작업장비도

① 자기의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② 다른 사람의 작업장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마지막 검사가 행해졌다는 물리적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본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규정 32조 내지 35조가 준용되는 파워프레스

② 이와 같은 파워프레스의 공구용 가드나 보호장치

③ 인력용을 포함하여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작업장비

④ 광산업(소프트 및 권취기) 규정, 1988이 적용되는 권취기

⑤ 건축(보건, 안전 및 복지) 규정 1996의 제29조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작업장비

(특수한 위험)

제7조 ① 만일 작업장비의 사용이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특수한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해당 장비를 이용하는 직주가 주어진 사람에 한하여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② 해당 장비의 보수, 변경, 정비 또는 (주유 등의) 서비스는 그와 같이 기록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인원들(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은, 받지 않던 관계없이)만이 수행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상기 ① ②항의 목적에 지정된 인원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어떤 작업도 관련된 적절한 교육·훈련을 수료하도록

록해야 한다.

(정보 및 지침서)

제8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인원들이 적절한 보건 및 안전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것과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 사용법에 관계되는 서면화된 지침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②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의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적절한 보건 및 안전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것과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 사용법에 관계되는 서면화된 지침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③ 상기 ① 및 ②의 일반성 원칙을 손상시킴 없이 이들 항목 중 하나가 요구하는 정보 및 필요한 경우 서면화된 지침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① 해당 작업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
- ② 예상되는 비정상적 상황 및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
- ③ 해당 작업장비의 사용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판단에 관한 사항
- ④ 본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 및 지침서는 관계된 인원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교육)

제9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인원들이 해당 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취해야 할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건 및 안전 목적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장비 사용전에 받도록 해야 한다.

②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의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해당 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취해야 할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건 및 안전 목적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장비 사용전에 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합)

제10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가 별표 I 제품의 안전에 관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협정서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협정서상의 설계 또는 설치에 관련된 어떠한 본질적 요구에 대해서도 그에 부응하여 설계되고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② 만일 본질적 요구가 어떤 작업장비의 설계나 설치에 적용될 경우 규정 제11조~제19조 및 제22조~제29조에 기술되어 있는 요구사항은 그 장비에 대해서 본질적 요구가 적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주의 사업장내에 또는 사업에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된 작업 장비 항목에 적용된다.

(기계의 위험부위)

제11조 ① 모든 사업주는 ②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① 기계의 위험부위 또는 회전부위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② 사람의 신체부위가 위험지역에 들어가기전에 기계의 위험부위나 회전부위가 효과적으로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는

① 모든 위험부위나 회전부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 및 범위까지 에워싸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이를 행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②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 및 범위까지 다른 형태의 가드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행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③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소 및 범위까지 그 기계와 관련하여 사용될지, 홀더, 밀어내기 막대 또는 유사한 보호설비를 제공하고 이를 행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④ 정보, 지침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③ 상기 ②항의 ① 또는 ②에 나타나 있는 모든 가드 및 방호장치는

① 이들이 설치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설치가 양호하고 우수한 재료 및 적절한 강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③ 효과적인 상태, 효율적인 작업순서 및 양호하게 보수되도록 해야 한다.

④ 보건 및 안전상 위험도를 증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⑤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험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계의 조작 사이클을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부당하게 시야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⑧ 부품의 고장이나 교체 그리고 정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이들 작업이 행하여 지는 기계에 설치·부착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 이러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가드나 방호장치를 떼어내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④ 상기 ②항 ③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호설비는 ③항 ①~④ 및 ⑦에 적합해야 한다.

⑤ 본 규정에서 "위험지역"이라 함은 사람이 기계의 위험부위나 회전 부위에 접촉할 경우 보건이나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기계의 내부 또는 주위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회전부위"라 함은 선반의 주축 넘어로 뻗어나와 회전하게 되는 피가공물의 부분을 의미한다.

(규정된 위험에 대한 보호)

제12조 (1)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래 ③항에 규정된 어떤 위험에 의해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만일 이러한 방지대책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이 어려운 경우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에 의해 요구되는 방안에는

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가능한 한 개인보호구 이상의 조치 또는 정보, 지침서, 교육 및 감독의 제공방안이어야 한다.

② 가능하다면 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위험발생 가능성을 감소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③ 상기 (1)항에 언급한 위험에는

① 작업장비로부터 떨어지거나 튀어나오는 품목이나 물질

② 작업장비의 부품이 깨지거나 분해되는 것

③ 작업장비에 화재 또는 과열이 발생

④ 작업장비 내에서 생산, 사용· 저장되어 있는 어떤 품목이나 가스, 분진, 액체, 증기 또는 다른 물질이 분의 아니게 또는 불시에 방출됨.

⑤ 작업장비나 그것으로 생산· 사용· 저장되는 품목 또는 물질이 분의 아니게 또는 불시에 폭발함.

④ 본 규정의 목적상 “적절히”라 함은 위험의 특성과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특성 및 정도에 관해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들이 인원의 보건이나 안전의 위험 관점에서 적용되고 이들 규정에 의해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전기 방사선에 관한 규정, 1985

② 작업 중 석면관리에 관한 규정, 1987

③ 보건상 유해한 물질관리에 관한 규정, 1994

④ 작업 중 소음관리에 관한 규정, 1989

⑤ 건설(머리보호)에 관한 규정, 1989

⑥ 작업 중 납관리에 관한 규정, 1988

(고온 또는 극저온)

제13조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 작업장비의 부품 및 작업장비에 의해 생산· 사용· 저장되는 품목 또는 물질이 이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고온이거나 극저온에 있을 때는 화상 또는 그을림에 의한 인원에 대한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동 혹은 운전조건의 현저한 변경을 행할 때의 제어장치)

제14조 (1) 모든 사업주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어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① 작업장비의 가동(어떤 사유이든지 정지했다가 재가동하는 경우를 포함)

② 작업장비의 속도, 압력 또는 다른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비교하여 보건 및 안전 위험성이 더 커지거나 혹은 이러한 위험의 특성이 달라질 경우 이러한 변경에 대해 제어를

② 항목 ③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업주는 항목 (1)의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 그와 같은 제어장치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항목 (1)의 ①이나 ②에서 언급한 어떤 작업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항목 (1)은 자동장치의 정상운전 사이클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재가동이나 운전조건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용 제어장치)

제15조 (1) 모든 사업주는 적절한 경우 작업장비가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접근이 용이한 제어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② 항목 (1)에서 요구하는 제어장치는 어느 것이든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를 완전히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항목 (1)에서 요구하는 제어장치는 어느 것이든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비의 기능을 정지시킨 후에 모든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항목 (1)에서 요구하는 제어장치는 어느 것이든 작업장비의 가동이나 작동조건의 변경을 위한 어떤 제어장치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비상정지 제어)

제16조 (1) 모든 사업주는 적절한 경우, 규정 제15조 (1)에 의해 공급된 제어장치의 작동 결과로 작업장비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위험 특성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접근이 용이한 비상정지 제어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에서 요구하는 제어장치는 어느 것이든 규정 제15조 (1)에 의해 요구되는 어떤 제어장치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제어)

제17조 (1)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의 모든 제어장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히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작업장비의 어떤 제어 장치도 그 제어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이 보건이나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

영국의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는 위치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㉓ 모든 사업주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제어장치든지 그 조작자가 제어 위치로부터 제어장치의 조작 결과로 사람이 그의 보건이나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곳과 범위에 대해서는
- ②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토록 작업장비를 가동하기 직전에 그 장비의 시동의 결과로 사람이 그의 보건이나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일 것. 다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곳과 범위에 대해서는
- ③ 작업장비를 가동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보고 들을 수 있고 기타의 다른 경고를 규정 제24조에 의해 알릴 것
- ④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의 가동이나 정지의 결과로 보건이나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위험을 피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수단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어시스템)

- 제18조 ① 모든 사업주는 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작업장비의 모든 제어시스템이 안전하고
- ② 계획된 사용환경에서 예상되는 고장, 결합 및 제약조건에 대해 정당한 허용한도가 고려되어 있는 제어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 ② 항목 ①의 일반적 원칙의 범위에서 제어시스템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그외 조작이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도 증가시키지 않을 것
 - ②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토록 해당 제어시스템의 일부가 어떤 고장이나 손상을 입거나 또는 작업장비의 에너지원의 공급이 끊길 경우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해 부가적인 위험도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 ③ 규정 제15조 또는 제16조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제어 조작에 장어를 주지 않을 것

(에너지원으로부터 격리)

- 제19조 ① 모든 사업주는 적절한 경우에 작업장비가 모든 에너지원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② 항목 ①의 일반적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에 언급한 수단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㉔ 모든 사업주는 어떤 에너지원도 작업장비에 다시 연결할 경우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보건이나 안전의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성)

제20조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 또는 작업장비의 어느 부분도 보건 또는 안전상의 목적으로 클램프 또는 고정시키거나 필요한 다른 방법으로 안전화 시켜주어야 한다.

(조명)

제21조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에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정비작업)

제22조 모든 사업주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정비작업이 그 장비가 가동정지된 상태에서나 그 외에 아래에 기술된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① 정비작업이 이를 수행하는 인원을 보건이나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어야 함.
- ② 보건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표시)

제23조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에 대해 보건 및 안전상 필요한 모든 적절한 표시를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고)

- 제24조 ①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비에 대해 보건 및 안전상 필요한 모든 적절한 경고 또는 경고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 ② 항목 ①의 일반적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고장치로써 주어지는 경고는 이들이 모호하지 않고 쉽게 인지되며,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제3부 이동식 작업장비

(이동식 작업장비로 인원의 운송)

제25조 모든 사업주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이동식 작업장비로 운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① 장비가 인원 수송에 적합한 경우
- ② 장비가 바위 또는 선로 관련 위험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특성을 가진 경우

(이동식 작업장비의 전복)

제26조 (1) 모든 사업주는 이동식 작업장비가 전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작업장비를 안정화
 - ② 작업장비가 단지 측면으로 넘어지는 것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③ 만일 구르게 될 경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구조로 할 것
 - ④ 상기 ③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할 것
- ② 이동식 작업장비가 전복되어 작업자가 압착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압착보호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 ③ 본 규정은 상기 ①항의 ② 또는 ③에 기술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본 규정의 준용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가 증가될 경우
 - ② 상기 ①의 결과 이동식 작업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경우
 - ③ 1998년 12월 5일 이전에 사업용 또는 사업시설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작업장비 항목과 관련하여 본 규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경우

(지게차의 전도)

제27조 모든 사업주는 규정 제26조 ③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사람이 승차하고 있는 지게차가 전복될 위험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가 추진 작업장비)

제28조 모든 사업주는 자가 추진 작업장비가 작동중 인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그 장비를 시동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
- ② 선로에서 동시 작동중인 작업장비가 두대 이상 있을 경우 충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 ③ 그 장비에 제동 및 정지장치가 있을 것
- ④ 안전관계상 요구될 경우, 주요 설비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작업장비에 제동을 걸어 정지시키기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어장치나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비상설비가 있을 것
- ⑤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야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그의 시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

절한장치를 제공할 것

- ⑥ 만일 밤에 혹은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i) 수행하려는 작업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 (ii)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에 충분히 안전해야 함.
- ⑦ 만일 작업장비나 운반되는 어떤 물질에 화재 위험이 있고, 종업원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장비가 충분히 가까운 곳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소화장비를 적재해 놓을 것

(원격조정되는 자가 추진 작업장비)

제29조 (1) 모든 사업주는 원격조정되는 자가 추진 작업장비가 작동 중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그 장비가 조절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한다.
- ② 압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동축)

제30조 (1) 작업장비와 그 부속품 또는 피견인물 사이에 있는 구동축에 의해 안전상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작업장비에 이와 같은 물림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
- ② 이와 같은 물림점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 ③ 모든 사업주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는 작업장비의 축에 안전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① 작업장비와 다른 이동식 장비사이에서 에너지 전달을 위한 샤프트 가 있는 경우
 - ② 샤프트의 체결이 풀렸을 때 오염 또는 파손될 수 있는 경우

제4부 파워 프레스

(본 제4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파워 프레스)

제31조 규정 제32조 내지 제35조는 별표 2에 기재되어 있는 파워 프레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파워 프레스, 가드 및 보호장치의 정밀 검사)

제32조 (1) 모든 사업주는 파워 프레스를 새로운 장소나 위치에 설치 또는 조립을 한 경우 다음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작업 개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①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펼할 것
 - (i)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여부
 - (ii) 작업하기에 안전한지 여부
- ② 어떠한 결함이든 모두 보수되어 있을 것
- ③ 모든 사업주는 다음 항목 ③과 관련되지 않는 가드나 방호장치에 대하여 다음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파워프레스에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해당 파워프레스상에 설치되었을 때 그 목적에 효과적임을 보증하기 위한 철저한 검사를 펼할 것
- ② 어떠한 결함이든 모두 보수되어 있을 것
- ③ 모든 사업주는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고정가드 부분에 대해 다음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파워프레스상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사업장내에 있는 파워프레스상에 설치되었을 때 그 설치 목적에 효과가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펼할 것
- ② 어떠한 결함이든 모두 보수되어 있을 것
- ④ 보건 및 안전조건이 유지되고 이들 조건의 어떠한 악화 상태가 적기에 발견되고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는 다음을 실시해야 한다.
- ① 모든 파워프레스는 다음 주기로 철저하게 검사되어야 하며, 그의 가드 및 방호장치는 파워프레스에 설치된 상태에서 다음 주기로 정밀검사되어야 한다.
 - (i) 고정식 가드만 있을 경우 적어도 12개월에 1회
 - (ii) 그밖의 경우 적어도 6개월에 1회
 - (iii) 파워프레스 또는 그의 가드나 방호장치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실시
- ② 어떤 결함도 파워프레스가 다시 사용되기 전에 보수되어야 한다.
- ⑤ (생략-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 ⑥ 항목 ④는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고정가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⑦ 본 규정에서 “결함”이라 함은 인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정 제 34조에서 정의되는 결함을 의미한다.

(가드 및 방호장치의 점검)

- 제33조 ① 모든 사업주는 공작기계나 금형에 대한 시험운전시를 제외하고, 파워프레스를 다음 사항 실시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사업주가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자와 같이 서면으로 위임한 인원에 의해 모든 가드와 방호장치가 파워프레스상에 설치된 상태에서 서 점검 및 시험을 행한 후 ③항에 준하여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

고 서명하여 놓을 것

- (i) 자격이 있는 자
- (ii) 이러한 목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는 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대리하는 자
- ② 가드 및 방호장치는 공작기계 조정 과정에 있어서 변경 또는 교환이 없어야 한다.
- ③ 모든 사업주는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자와 같이 사업주가 서면으로 위임한 인원에 의해 모든 가드와 방호장치가 파워프레스상에 설치된 상태에서 점검 및 시험을 행한 후 ③항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놓지 않았을 경우, 작업시간의 4시간이 경과 후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① 자격이 있는 자
- ② 이러한 목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는 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대리하는 자
- ③ 본 규정에 준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할 각각의 가드 및 방호장치와 이들을 설치하여 놓고 점검 및 시험을 행하였던 파워프레스를 구분하기에 충분한 세부사항이 기재될 것
- ② 점검 및 시험의 일자 및 시간에 관해 언급할 것
- ③ 파워프레스상의 모든 가드 및 방호장치가 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에 있고 효과적임을 언급할 것
- ④ 본 규정에서 파워프레스와 관련된 “작업시간”이란
 - ① 주간 또는 야간 작업이 행해지는 시간이나
 - ② 교대로 운용되는 사업장일 경우는 각 교대로 하는 근무시간

(보고)

- 제34조 ① 규정 제32조에 의해 사업주를 위하여 정밀검사를 행하는 자는
 - ① 자신의 견해상 사람들에게 위험하거나 혹은 위협할 수 있는 파워프레스의 가드 또는 방호장치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③항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자신 또는 대리자가 서명 또는 그와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인정한 검사 보고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신의 견해상 사람들에게 위험하거나 혹은 위협할 수 있는 파워프레스의 가드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있을 경우 상기 보고서의 사본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파워프레스가 놓여 있는 지역의 집행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④ 규정 제33조에 의해 점검 및 시험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견해상 사람들에게 위험하거나 혹은 위협할 수 있는 가드 또는 방호장치

특 집

의 어떠한 결함에 관해서도 그 이유에 관한 의견과 함께 사업주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정보의 보관)

제35조 (1) 모든 사업주는 규정 제34조 (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정본은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주는 규정 제33조 (1)항 ①(ii) 나 ②항 ②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점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① 관련된 파워프레스 또는 가까이에 다음 성적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 ② 그 이후 해당성적서에 서명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별표 1] 제품의 안전에 관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열점서

[별표 2] 규정 제32조에서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 파워프레스

제 목	참 고 차 료
-공장 및 장치의 건설(소음 배출) [별표 2] 파워프레스 관련 규정 또는 방호 장치의 건설(소음 배출)에 입되어야 하는 사항	S.I.1985/1968, S.I.1989/1127에 의 한 1989년 12월 18일 제1012/488 및 1995/2367에 의해 개정
-전기의료장비(EMC요구)에 관한 규정 1988	S.I.1988/1586, S.I.1994/3017에 의 해 개정
-저전압 전기장치(안전)에 관한 규정 1989	S.I.1989/728, S.I.1994/3260에 의 해 개정
-건축용 제품에 관한 규정 1991	S.I.1991/1620, S.I.1994/3051에 의 해 개정

영국의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 목	참 고 자 료
-간단한 압력 용기(안전)에 관한 규정 1991	S.I.1991/2749, S.I.1994/3098에 의해 개정
-잔디 깎는 기계(소음 배출표준의 조정)에 관한 규정 1992	S.I.1992/168
-가스설비(안전)에 관한 규정 1992	S.I.1992/711
-전자식의 호환성에 관한 규정 1992	S.I.1992/2372, S.I.1994/3080에 의해 개정
-기계류의 공급(안전)에 관한 규정 1992	S.I.1992/3073, S.I.1994/2063에 의해 개정
-개인보호구(BC 지령)에 관한 규정 1992	S.I.1992/3139, S.I.1993/3074 및 1994/2326에 의해 개정
-이식용 의료장비에 관한 규정 1992	S.I.1992/3146, S.I.1995/1671에 의해 개정
-의료장비에 관한 규정 1994	S.I.1992/3146, S.I.1995/1671에 의해 개정
-전기장치(안전)에 관한 규정 1994	S.I.1994/3017
-가스설비(안전)에 관한 규정 1994	S.I.1994/3260
-잠재적인 폭발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호시스템에 관한 규정 1996	S.I.1995/1629
-리프트에 관한 규정 1997	S.I.1996/192

1. Hot Press

- 2 행정거리가 6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파워프레스
- 3 종이재단기
- 4 펀치와 절단점용기계, 타트 펀치프레스 또는 펀치, 전단 또는 절단을 위한 유사기계
- 5 프레스 브레이크와는 다른 것으로 철재 부위를 구부리는 기계
- 6 Straightening Machine
- 7 Upsetting Machine
- 8 Heading Machine
- 9 리벳 죄는 기계
- 10 Eyeletting Machine
- 11 Press Stud Attaching Machine
- 12 Zip Fastener Bottom Stop Attaching Machine
- 13 Stapling Machine
- 14 Wire Stitching Machine
- 15 금속분말을 다지기 위한 파워프레스

1 해당 정밀검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할 사업주의 이름

2 해당 정밀검사보고서가 작성되는 사업장 주소

3 검사를 받은 각 항목에 대하여는

- ① 검사대상기계가 파워프레스, 연동식 가드, 고정식 가드 또는 다른 형태의 가드나 방호장치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기재

② 제작자, 형식 및 제작연도

4 새로운 현상이나 새로운 위치에 설치 또는 조립 후 최초의 정밀 검사를 한 경우에는

① 동검사가 그와 동일한 검사라는 사실

② 해당 파워프레스가 작업하기에 안전하지 여부 또는 작업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점에 관해 기재

③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확인 및 그 결함에 대해 기술

5 상기 4항에 해당하지 않는 파워프레스를 정밀검사한 경우에는

① 동검사가 4항과는 다른 검사라는 사실

② 해당 파워프레스가 작업하기에 안전하지 여부 또는 작업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 기재

③ 인원에게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확인 및 그 결함에 관해 기술

6 가드 또는 방호장치의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① 이와 같은 목적에 효과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

② 인원에게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확인 및 그 결과에 관해 기술

7 작업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보수, 재작업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8 현재는 아직 위험하지는 않으나 인원에게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결함의 경우

①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 가능한 시기

②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보수, 재작업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보수를 요하는 결함

10 상기 7항에 있어서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된 보수, 재작업 또는 변경 사항

11 규정 제34조 ①항 ①에 의해 상기 8항에 기술되어 있는 결함 사항을 사업주에게 통지한 날짜

12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자격 및 주소 : 작성자가 자영업자인지 여부와 회사종업원인 경우 사업주의 이름 및 주소

13 정밀검사일자

14 보고서 작성일자

15 보고서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자의 이름과 서명